

1.3 산학협력위원회규정

2006. 11. 2 제정

2014.01.07. 개정

2020.09.01. 개정

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 (이하 '연구단'이라 한다) 과 산업체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산학협동을 추진하고, 그에 필요한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여 효율적인 기술이전 및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칭) 본 위원회의 명칭은 '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' (이하 '위원회') 라 한다.

제 3조 (위원장)

- (1) 본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연구단장이 임명한다.
- (2)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4조 (구성)

- (1) 위원회의 위원은 본 연구단 소속 교수 5인 내외 (위원장 포함) 와 산업계 대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(2) 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단장이 임명한다.
- (3)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의 대 기획부학장을 위원회 회의에 초빙할 수 있다.

제 5조 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6조 (직무) 위원회는 산업체와 연구단간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산학협동 활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.

(1) 심의 및 업무 조정

- ① 연구단과 산업체간 연구의 활성화 및 협동체의 확대를 유도한다.

- ②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체제를 강화한다.
- ③ 대응출자 산업체에게 개발된 신기술 및 특허의 우선적 실시권에 대하여 심의, 조정한다.
- ④ 상품화를 통한 이익의 일부를 연구단-산업체 공동연구로 재투자되도록 유도한다.
- ⑤ 산업체와의 컨소시움을 형성하고 이를 권장하며 공동연구 개발의 동기를 유발한다.

(2) 교육

- ① 산업체에 필요한 교과과정개발 및 산업체 전문인력의 석,박사과정 입학을 권장한다.
- ② 대학내 산업체 연구인력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, 개설한다.
- ③ 대학교육에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이 벤처 산업의 모체가 되도록 한다.

◁ 부 칙 ▷

- (1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06.11.2)로부터 시행한다.